

# 『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8. 13.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8. 24

다. 상정일자 : 제62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9. 8. 30 의결)

### 2. '9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요구 현황

사 업 명	사 업 량	예비비사용지출액	사용일자	비 고
총 계	26건	710,612		
수송대 익사사고 배상금지급	3명	41,850	98.65	기획감사실
일용인부 퇴직금	3명	280,000	4.16	내무과
	2명		6.19	
	17명		8.6	
어린이집 시설장 퇴직금	3명	4,101	4.16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취로사업	3,739세대	21,650	4.25	"
어린이집 종사자 퇴직금	2명	5,448	5.1	"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94세대	806	10.16	"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	1세대 3명	24	11.25	"
공공근로사업	4개 사업	7,334	4.25	"

사 업 명	사 업 량	예비비사용지출액	사용일자	비 고
축산농가 가축배합사료대지원	639호 (640,107두)	146,281	1.24	산업과
농지원부 일제정비	835명	7,680	4.25	"
벼멸구 긴급공동 방제비	27,613ha (2,734ha)	24,608	8.6	"
벼멸구 공동 방제비(2차)	2,690ha (1,569ha)	4,442	8.17	"
8월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농약대)	19.1ha	206	10.29	"
태풍“예니”농작물복구(대과)	0.7ha	96	11.25	"
2차공공근로사업	7개사업	117,667	8.17	지역경제과
당산농공단지 수해복구	L=110m H=20m	128,068	11.25	"
산지정화사업 및 산림가 꾸기사업	100ha	23,355	6.19	산림과
등산로 정비사업	2명	6,869	4.25	"
8월호우피해 농경지복구	5.75ha	2,200	10.29	건설과
태풍“예니”농경지 복구	7.31ha	12,896	11.25	"
8월호우 농경지복구추가분		1,747	12.3	"
재해주택 복구	1동	500	10.29	도시환경과
재활용품 선별작업	5명	4,500	4.25	"
상수원 보호구역 내 정화사업	7,347km <sup>2</sup> 인원:5명	8,849	4.25	수도사업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예산회계법 제21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비비로써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하여 집행한 예비비를 다음 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회 요구된 예비비 승인안의 법적 하자는 없었을 뿐 아니라
- 금회에 요구된 26건의 총7억 1,061만 2,000원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시기 등을 분석 검토한 결과 예비비집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됨.

### 4. 수정안 요지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없음
- 나. 수정이유 : 없음
- 다. 수정골자 : 없음

### 5. 심사결과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 34조, 예산회계법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비비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예비비 사용승인은 지방자치법 제 120조 2항에 의하여 집행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이번 제62회 임시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예비비 사용승인 요구의 총 26건에 7억 1,061만 2,000원에 대해서 예비비로서의 집행이 불가피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부 지출내용에 대해서는 '98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토록 촉구하고

- 예비비 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마찬가지로 경비의 지출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지출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의회가 이를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차기 연도 예산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있어 향후부터는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전 각종 보고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거친 다음에 집행할 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하였음.